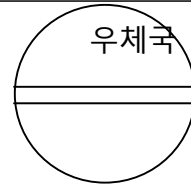


보내는 사람



바코드 18mm

음성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우편반송용
바코드 17mm

우편반송용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
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※ 계산식

$$\text{납기 내 지방세액} + \text{납부지연가산세}(\text{납기 내 지방세액의 } 3\%) + \text{납부지연가산세}(\text{납기 내 지방세액} \times 0.66\% \times \text{경과월수})$$

시·군 (수업은행
확인용)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
번호

남기	내:	까지
세	모	남기 내 그애

[illegible]
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기 후 금액	

수납은행용
비코드
수납용

직인

시·군

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	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:
주 소:

납세자번호:

지 방 세

과제대상:

수납용 바코드

수납용

세 목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
합 계				

납기 내
까지

납기 후
까지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	년 월 일
-------	-------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지리

수납인

전자납부
번호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「지방세법」 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납부지연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「지방세법」 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납부지연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